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9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정은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천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2. 5.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2. 5. 16. 접수 제163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양수금 채권

1) D 주식회사는 2016. 3. 8. C에게 2,900만 원을 변제기 2020. 3. 5., 이자 연 19.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9. 3. 15. D 주식회사로부터 위 1)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고, 2019. 4. 12. C에게 위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제1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가소53533호). 위 법원은 2022. 8. 11. C에 대하여 원고에게 31,366,426원과 그 중 17,469,584원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제2 양수금 채권

1) E 주식회사는 2016. 12. 16. C에게 7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2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20. 9. 11. F 주식회사로부터 위 1)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고, 2020. 10. 14. C에게 위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제2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가소56631호). 위 법원은 2022. 11. 29. C에 대하여 원고에게 4,354,456원과 그 중 3,625,082원에 대하여 2022.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아내인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22. 5. 13.경 C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와 C는 2023.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3. 3. 21.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고(2023호협62호),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와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3,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약 9개월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점, ②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C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C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현 상태대로 각자 보유하기로만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앞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C가 보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외에 피고와 C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C는 2009. 12. 22. 혼인한 후 2023. 3. 21. 협의이혼에 이르기까지 약 1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점, ② 피고와 C가 협의의사이혼 확인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서 C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C가 자신이 혼인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200만 원 상당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8,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37,420,860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책임재산에 제공되는 부분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정도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차선영